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제1장 사생활 침해





## 제1장 사생활 침해

### 사례 1

의결번호	제2015-12호
매 체 명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17일자 국제면
기사제목	美 필라델피아서 한인 추정 대학 신입생 추락사

#### 1. 보도내용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 김 양(18)이 15일(현지시간) 시내 중심가의 건물 8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략) 김 씨는 뉴저지에서 자랐으며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필라델피아 ○○대학 ○○○○대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망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공익과 무관한 사인의 사생활, 성명과 나이, 학력사항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2

의결번호	제2015-72호
매 체 명	경남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람16면
기사제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 1. 보도내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제하의 사진  
 「(전략) 이날 욕지도 ○○○도 거주 박모(79) 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 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송되고 있는 응급환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면서 성과 나이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이송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통영시 욕지면 상노대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날 욕지도 ~~상노대도~~ 상노대도 거주 박모(79)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통영해경은 주변해역을 경비중이던 50t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함정내 설치된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해 부산대학병원과 실시간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 사례 3

의결번호	제2015-191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2일자 경제면
기사제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 1. 보도내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제하의 사진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특정 기업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접근이 차단된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입력: 2015.06.02 10:00 / 수정: 2015.06.02 10:48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견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이 회장 투병 생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개념 대중증합지 <더팩트>는 최근 이건의 회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VIP 병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과 그룹 수뇌부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장면 등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더팩트>는 이 회장 건강 상태를 둘러싼 세간의 억측이나 악성 루머 등이 삼성은 물론 나라 경제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판단, <더팩트> 카메라에 잡힌 이 회장의 근황을 보도한다.<편집자 주>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73)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견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이 회장 투병 생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개념 대중증합지 <더팩트>는 최근 이건의 회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VIP 병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과 그룹 수뇌부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장면 등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더팩트>는 이 회장 건강 상태를 둘러싼 세간의 억측이나 악성 루머 등이 삼성은 물론 나라 경제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판단, <더팩트> 카메라에 잡힌 이 회장의 근황을 보도한다.<편집자 주>

'사망설'은 헛소문에 불과했다. 지난 1년 여 동안 삼성 이건의 회장의 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10일 급성 심근 경색을 일으킨 이건의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권이 지라시(정보지)와 일부 매체에 의해 '사망설'의 대상으로 거론돼 파장을 낳았으나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22일 확인한 결과, 인공호흡기나 외부 의료 장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견재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일상적으로 병실의 이 회장을 찾아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확인됐으며, 병상에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인됐다. 이건의 회장이 삼성 이승업의 훈련에 반응을 보였다는 삼성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로써 사실에 무게를 둘 수 있게 됐다.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이 회장 시선에 따라 TV 위치를 이동 조절한다고 밝혔다.

## 사례 4

의결번호	제2015-222호
매 체 명	매일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종합1면
기사제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 1. 보도내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제하의 도표 및 보도

##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의 성, 나이, 근무지, 담당 업무 외에 가족들의 직업 및 나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청년 공무원 1차 양성...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삼성서울병원 들렀다 감염  
같이 올라간 누나는 확진 판정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 근무  
'슈퍼 전파자' 나올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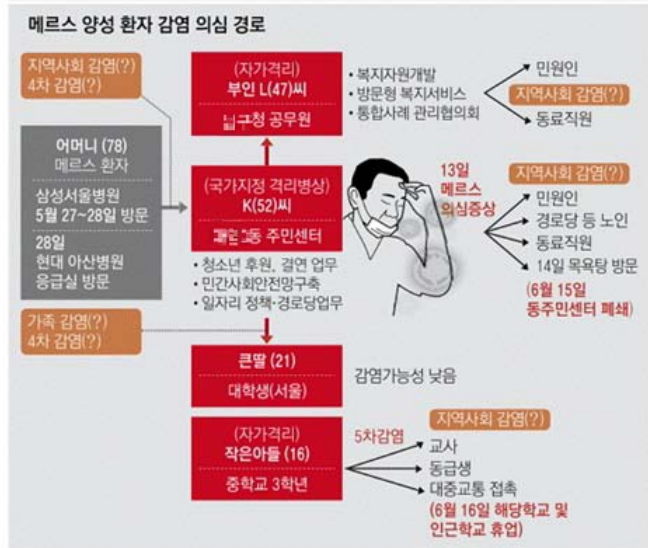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청정지역이  
있던 대구도 뚫렸다. 그동안 대구는 메르  
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없었지만  
15일 첫 양성 판정 환자가 나온 것이다.

◎2·3·4면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 청년 공무원  
인 K(52) 씨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메  
르스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K  
씨의 가검물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2차  
검사를 통해 확진을 위한 최종 확인 작업  
에 들어갔다. K씨가 2차 검사에서도 양  
성 판정을 받을 경우, 대구에서는 처음  
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K씨는 ▶▶▶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7, 28일 어머니(78)와 함께 삼  
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하루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고 이튿날 대구로 돌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K씨의 어머니는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삼성서울병원 방문 이후 보름  
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 등 평소대로  
생활했으며 지난 13일 오후와 고열 등  
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주말·  
휴일을 집에서 버틴 뒤 15일 연가를 내  
고 집에 머물다 이날 오후에야 ▶▶▶  
건소에 연락, 메르스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문의했다. 결국 그는 15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격리



조치됐다.

K씨는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  
정을 보였고, 현재 발열 등 상태는 경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의 확  
진 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K씨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누나(57·대전)도 확  
진 판정을 받았다. 부인과 자녀 등 가족  
들은 대구시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  
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씨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며 다  
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대량 감  
염에 대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 K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후원·결연업무  
와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  
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자리였다.

K씨는 또 직원들과 회식을 갖는 등 여  
러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  
로 확인돼 메르스 확산 여부에 촉각이 곤  
두서고 있다. 또한 K씨의 아내와 자녀  
등에도 메르스가 전파됐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K씨 부인 L(47) 씨는 공무원  
으로 ▶▶▶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시작된 병원 내  
감염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대  
구경북 등도 감염시키면서 메르스 감염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추세  
다. 특히 대구의 K씨나 경북의 확진 환  
자인 교사 Y씨 등은 다수와 접촉하는 공  
무원·교사여서 대구경북에서도 '슈퍼 전  
파자'가 나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제2장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 제2장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 사례 5

의결번호	제2015-4호
매 체 명	인터넷 시사주간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클리닉 성형외과 김○○ 원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 1. 보도내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북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빌딩 3, 5층에 소재한 ○○○○클리닉 성형외과 (<http://www.○○○○○.net/○○○○○> 의원) 원장 김○○(51)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였으며 병원의 상호, 명칭, 홈페이지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6

의결번호	제2015-224호
매 체 명	경찰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8일자 경찰뉴스면
기사제목	편의점 강취 특수강도범 검거

## 1. 보도내용

「(전략) 부산 영도경찰서 ○○파출소는 8일 새벽 3시10분경 부산 영도구 ○○동 ○○○○ 편의점에서 홍모 군(18세/남)등 2명 중 1명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2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등 101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홍모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중략)

도주하던 홍○○이 8층 건물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경위 김○○과 순경 심○○이 현장에서 목격했다.(중략)

피혐의자 홍○○에게 ‘빨리 내려오라 별 일도 아닌데 빨리 내려와’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중략) 피혐의자 홍○○은 8층에서 계속 바라만 보았고 경위 김○○이 피혐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큰 일 아니니 빨리 내려와라’ 설득하였고, 형사 당직차량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혐의자 홍○○에게 경위 김○○이 미란다 원칙 등 고지하고 검거하게 됐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3장 범죄수법 묘사





## 제3장 범죄수법 묘사

### 사례 7

의결번호	제2015-5호
매 체 명	뉴스타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2월 1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 “○○○○ 만드는 법”... ‘이렇게 간단할 수가!’

#### 1. 보도내용

「(전략) ○○○○는 ○○○○과 ○○의 연소 원리를 이용해 만드는 고체 화약의 일종을 뜻한다.

○○○○는 ○○○○과 ○○, 전자저울, 종이컵, ○○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 ○○g에 ○○ ○○g을 넣고 ○○을 ○○~○○g 넣어준 뒤 끓이면 된다. 이때 타지 않게 저어서 물렁한 고체 상태가 될 때까지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물에 ○○이 생겨나면 빨리 젓거나 불에서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굳기 전 ○○ 형태로 만들면 끝난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폭발물인 ○○○○의 재료 및 제조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8

의결번호	제2015-75호
매 체 명	주간동아
보도일시 및 위치	제981호(4/1~4/7) 사회면
기사제목	신용카드 위조 1분이면 똑딱

## 1. 보도내용

「(전략) ○○○를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준비는 거의 끝난 셈이다. 이제 신용카드 개인정보와 이를 덮어씌울 실물 ○○만 있으면 1분도 안 걸려 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 판매 글은 대부분 e메일 주소가 달랐지만 인터넷 전화 ○○○나 통합 커뮤니케이터 ○○○ 아이디(ID)가 같은 것으로 봐서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이나 중국 메신저 ○○ 사용을 선호했다. 이렇게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구매를 의뢰하자 한 명으로부터 답이 왔다. ○○○는 사용법을 포함해 30만원, 명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건당 2만원씩 25건 단위로 묶음 판매한다는 것.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9

의결번호	제2015-409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1228호 2015년 11월 2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딥 웹으로 통하는 ‘○’ ‘○○’ 브라우저의 세계

## 1. 보도내용

「(전략) 어린이 음란물을 뜻하는 ‘○○·○○’ 페이지들의 링크가 수십 개 걸려 있었고 마약, 폭발물, 총기 거래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의 사항으로 “(○○를 이용하면) 표면 웹 로그인을 자제해야 한다. IP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여 관리자의 주목을 받는다” 또는 ‘합정 피하는 법’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과 이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적어 놓기도 했다. (중략)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막히지 않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검색창에 ‘○○’ ‘○○’ ‘○○’ 등 키워드를 차례로 입력하니 16자리 영어와 숫자로 이뤄진 사이트 목록이 나왔다. 가장 위에 검색된 사이트 몇 군데를 들어가 보니, 경고 없이 아동의 특정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중략)

이번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 ‘○’ ‘○○○’ 등을 입력해 한국어 마약 거래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중략)

다만 특이한 점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 등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화폐인 ‘○○○○’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을 입·출금을 하려면 ‘○○ ○○’ ○○○ 또는 ○○를 생성해야 하는데, 1회용으로 생성할 경우 거래 즉시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적 불가능하다. 송금수수료도 100원 이하로 낮은 편이다. 이곳에는 ○○○○을 환전하는 방법, 환전소 위치, ○○○○을 입·출금할 수 있는 ‘○○○○’ 코드 생성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음란물, 마약, 총기 등의 익명 거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4장 자살 관련 보도





## 제4장 자살 관련 보도

###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5-43호
매 체 명	고성인터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2월 4일자 고성뉴스면
기사제목	고성경찰, 자살 기도자 구조

#### 1. 보도내용

「고성경찰, 자살 기도자 구조」 제하의 사진

「고성경찰서 ○○파출소에서는 2월 3일 오후 1시경, ○○면 ○○리 ○○빌라 2층 자택 내에서 신병을 비관 자살을 기도한 백○○ 씨(48·남)를 뛰어남 사건 대처로 설득 끝에 구조하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기도자의 성, 나이, 자택주소, 초상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기도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회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5-206호
매 체 명	휴먼누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5월 13일자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동 ○○○○ 일가족 5명 변사사건

## 1. 보도내용

「○○동 ○○○○ 일가족 5명 변사사건」 제하의 사진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가족 변사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 자살자 가족의 성명, 나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여 자살자와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해운대 모텔에서 일가족 5명 변사사건

등록일자 [ 2015년05월13일 11시33분 ]



### 일가족 5명 변사사건

#### □ 사건개요

◦ '15. 5. 13. 07:02경 해운대구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앞에서 신변을 비판하여 부모와 누나, 조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신고한 것임.

#### □ 관련자 인적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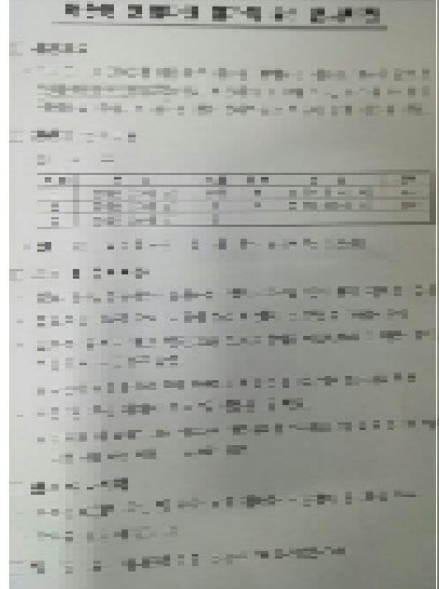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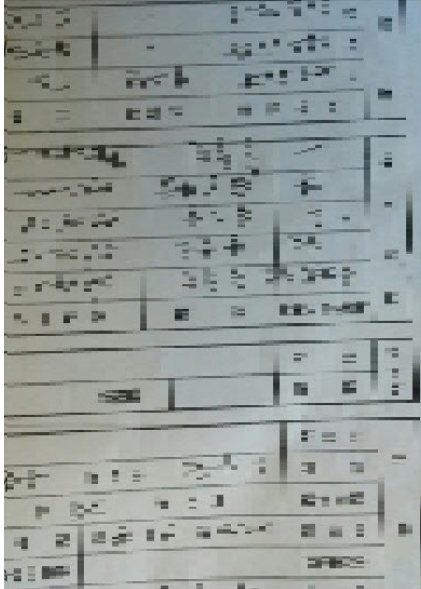
#### 변 사 자

연 번	성 명	관 계	연 번	성 명	관 계
1	송00 (37세, 남)	본인	4	송00 (41세, 여)	누나
2	송00 (67세, 남)	부	5	정00 (8세, 남)	조카
3	양00 (64세, 여)	모			

◦ 신 고 자 : 회사원 김 00 - 관리사무소 보안실장

#### □ 조치 및 수사사항

- 신고 접수, 경찰서장·형사과장·당직·과수팀 현장 출동, 감식등 수사
- 신고자는 모텔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한 것이라는 진술
- 변사자 주머니 메모를 발견하고 현장 확인, 거실에서 시신 4구 발견
  - ※ 나란히 누운 상태로 특이 이상없고 목 졸린 흔적이 있어 질식사료 추정
-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유서 및 신분증 등 발견
  - ※ '가족들 다 보내고 제가 떨어져서 발견되어야 가족들을 수습할 수 있기에 뛰어 내립니다' 라는 내용 - A4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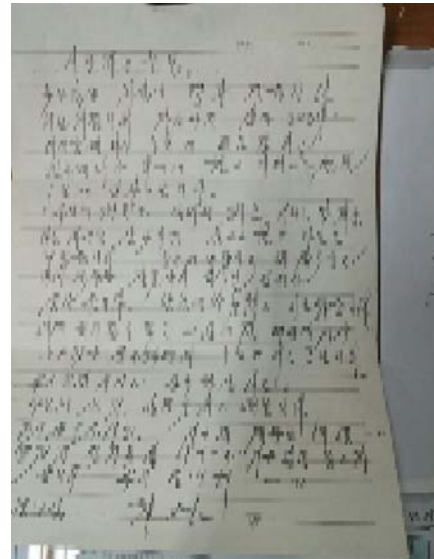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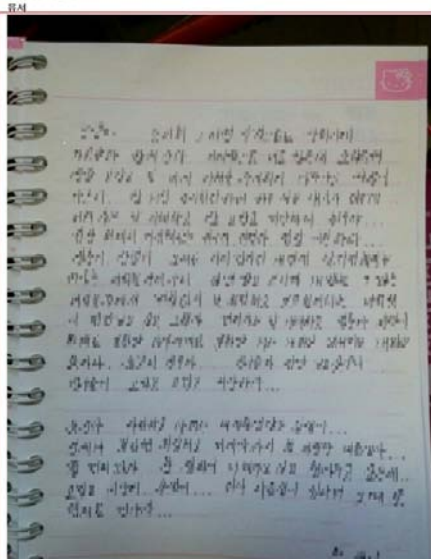


**분량**

□ 향후 수사계획

- 아파트 CCTV 확인 및 유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 계속 수사
- 국과수 부검 예정(5. 14)

형사과 / 해운대



##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5-227호
매 체 명	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사회A13면
기사제목	20代 남성의 ○○○ 증독死... 비밀은 ‘갈색병’

## 1. 보도내용

「(전략) 숨진 A 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 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 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mg 이하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 씨는 치사량의 ○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 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 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과수는 “A 씨가 병에 담긴 액상 ○○○을 마시고 증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5-269호
매 체 명	인터넷 씨티21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16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읍 7급 공무원 아파트 투신 자살

## 1. 보도내용

「(전략) ○○시 ○○읍사무소 직원 A 씨(40·남)가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전 7시 30분께 ○○동 B아파트 옥상에서 지면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옥상으로 올라간 점을 들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혼인 ○급 공무원 A 씨는 ○○읍사무소 ○○계에서 ○○보전,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했다고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봐왔다. (중략)

한 공무원은 “아버지가 ○○ ○○ 정년을 마쳤고 부모님이 서울 ○○에 살고 있다. 집과 시골에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금전 문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 째 밀려 있었다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공과금 납부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편”이라며 달리 봤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저 번에도 (A 씨가) ‘규정에 맞지 않아 ○○전용을 거부했더니 민원인들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압박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원 성격의 ○○ 업무를 오래 보면서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 근무지, 담당 업무,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

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추정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5-330호
매 체 명	매경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여의도 ○○○○○증권 건물서 30대 여직원 투신

## 1. 보도내용

「(전략)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 건물 15층에서 물류회사인 ○○○○○ 직원 신모 씨(39·여)가 투신했다. 신 씨는 투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업,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 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5-44호
매체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2월 26일자 사회9면
기사제목	중고생까지 ‘허브마약’을...

#### 1. 보도내용

「(전략) ○○마약은 흰 가루 물질인 원료를 물에 섞어 ○○이나 한약 재료 등 ○○ 식물에 뿌려 말린 뒤 ○○한다. (중략)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스’ ‘○○기’ 등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g당 ○만~○만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 판매액은 총 6000여만원이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구입 경로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5-64호
매 체 명	인터넷 인천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필로폰 버금가는 강한 환각... 유럽·美 오래전부터 규제

## 1. 보도내용

「(전략) 8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 잎(사진)은 아프리카 뿔(소말리아 지역)의 고산지대, 아라비아 남부와 동아프리카 해안에 걸쳐 재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한 자극 성분을 내거나 기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 잎을 씹었으며, 사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 사람이 한 번에 ‘○○’ 잎을 씹는 양은 ○~○g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 잎에 향정신성, 환각 효과를 주는 성분인 ‘○○○’과 ‘○○’이 있으며, 그 효과가 암페타민에 견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은 국내에서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마약이다. ○○○○○○의 주성분이 ○○○○이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마약류의 명칭,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5-92호
매 체 명	인터넷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탤런트 김○○ 씨 등 마약 투약혐의 불구속 입건

## 1. 보도내용

「(전략)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 ‘○○기·○○스(마약 은어) 판매’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 필로폰 ○g당 ○만~○만원을 송금받은 뒤 박 씨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구입가격 및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5-209호
매 체 명	대경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5월 15일자 사회4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상승 투약 외국인 무더기 검거

## 1. 보도내용

「(전략) K 씨 등은 지난 2월 신원미상 캄보디아인으로부터 ‘○○’ 1정당 ○만원에 구입, 모텔과 주거지에서 ○○를 내 ○에 타 마시거나 ○○에 넣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L 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 ○○공단과 ○○공단, ○○공단 등지에서 신원 불상의 필리핀 선원에게서 수 차례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 ○○ 위에 마약을 올려놓고 ○○○로 ○을 가해 증발하는 ○○를 ○○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종마약인 ○○는 세계 최대 밀매조직인 ○○가 개발해 2000년부터 국내로 유입된 마약으로, 필로폰 보다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더 강하며, 태국 등지에서 ○○ 형태로 생산된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및 복용방법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5-421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1월 20일자 뉴스면
기사제목	전자담배로 대마초 ○○ 신종 마약 ‘○○’ 경보… 편의성 때문 확산 빨라

## 1. 보도내용

「(전략) 속칭 ‘○○’라 불리는 대마 추출액을 전자담배 ○○○에 끼워 범행을 저지르는 이 같은 수법은 휴대가 간편하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

‘○○’는 ○g에 약 ○만원 정도로 일반 대마초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비싸지만, 휴대가 간편하고 숨기기가 편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략)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정문에 주차된 마약상 A 씨의 차 안에서 대마 추출액인 속칭 ‘○○’ 5그램을 구입했다. 구 씨는 구입 직후 도로에서 대마 추출액 ○g을 전자담배 ○○○에 집어넣고 ○○를 흡입했다. (이하 생략)」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및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제6장 기사형 광고





## 제6장 기사형 광고

###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5-253호
매 체 명	대구광역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7일자 여성.문화면
기사제목	"여름철 기미 고민 피부과 찾는 사람 늘어"

#### 1. 보도내용

「(전략) 한 가지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 피부과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하고, 효과가 뛰어난 레블라이트, 엑셀브이, 젠틀맥스 프로 등 레이저를 병행 치료해 기존에 토닝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기미 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략)

○○ 기미 치료 피부과인 ○○ 피부과의 관계자는 “다양한 레이저 기술 이외에도 프리미엄 관리를 통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필링, 이온토와 비타민C 및 그 외에 줄기세포 등 세포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을 침투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치료 전보다 전반적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시 ○○구 ○○정류장 앞 ○○○빌딩 4층에 위치한 ○○피부과에서는 색소질환, 여드름, 흉터, 모공, 항 노화, 주름, 탈모, 비만, 피부질환 등 다양한 피부 치료를 실시, 최신 20여종의 우수한 레이저 장비와 프리미엄 피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기자」

####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 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5-356호
매 체 명	뉴스컬처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8월 4일자 라이프스타일면
기사제목	‘지긋지긋했던 여드름… 72시간이면 잡는다’… ○○○○의원, ‘○○○ 스피쿨링’

## 1. 보도내용

「○○○ 객원기자」

「(전략) 이러한 가운데,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잡아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법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드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이들에게도 속 시원한 ‘해결법’이 등장한 것.

여드름의 네 가지 원인을 피부 재생 주기(Turn-over)에 맞춰 30일 내에 빠르게 치료하는 박피 치료법인 ‘○○○ 스피쿨링’. (중략)

치료 후 3일 후부터 울퉁불퉁한 피부표면이 탈락하며 매끈한 피부를 보여주는 빠른 효과로, 시술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때문에 시술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72시간의 기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물리·화학적 필링이 아니라 세포 분열 촉진으로 자연스럽게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자극이 적고, 과다하게 늘어난 피지샘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시술을 받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한 부분이다.

○○○ 스피쿨링 치료법을 도입한 ○○○의원 ○○점의 최○○ 대표원장은 “염증성 여드름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이들, 광 과민제나 여드름치료제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보고 싶은 이들에게 ○○○ 스피쿨링이 추천되며,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 최소 3회 시술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역 ○○○ 클리닉은 ‘강북권 최고 뷰티메디컬센터’를 표방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각종 첨단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이며 알찬 피부과 의원’로 알려졌다. 서울대 병원 전문의 출신으로 탁월한 감각을 지닌 ‘여의사’ 2명이 운영 및 진료하는 피부과 의원이다. “1:1 맞춤진단을 통해 개개인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섬세

하고 안전성 높은 시술로 병원을 방문한 많은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최○○ 대표원장은 ○○대병원 전문의를 거쳐 ○○○ 의원, ○○피부과, ○○○ 의원 ○○점의 대표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회, 대한○○○○학회, 대한△△△△학회 등 다양한 피부 및 비만 치료 학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의 ‘○○○’ 레이저, ‘○○○’ 등에 대한 임상 자문의로도 활동 중이다. 채널A, YTN 채널 등 각종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 역할을 해 오고 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 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